의 안 번 호

1527

[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레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 2. 25.(월), 노세영 의원 외 6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3. 26.(화)

2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등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기부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)

다.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및 제13조)

라.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·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(안 제14조)

4. 근거법규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자발적 기부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

- 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・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・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・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. 다만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・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・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-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・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・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・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- 2.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
- 3.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・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・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
-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.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1. 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2.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<u>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개정 2011. 3. 29.>

- ②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 시·도지사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⑥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